

## 2025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일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협업과제 승인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 또는 혁신성장을 위한 상용화 지원
    - \* 상용기술 미확보, 상호 간 이해충동, 환경변화에 따른 협업체 구성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협업중단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지원이 필요
  - (지원규모) 신규 4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1개월 이내 과제당 사업비 20백만원 지원(VAT제외)
    - \* 지원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국)
    - 협업계획승인을 받은 추진기업\* 중 해당 사업을 수행중이며, 애로 해결 및 사후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기간	협업체 구성
			협업기업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지원	기업 당 20백만원	11~12월	추진기업+참여기업

## 2. 사업내용

###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2월 중순(예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5.11.1.(토) ~ 11.6.(목) 18:00 까지



\* 사업추진 기간 확보를 위한 공고기간 단축하여 추가 모집 예정

### □ (지원내용) 협업사업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 고도화, 혁신제품 등 비즈니스 창출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

구분	내용		비목	지원한도
애로 해결	기술 지원	기술 자문,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 설계디자인, 개발지원	수수료, 용역비, 재료비	2천만원
	사업화 지원	시장조사, 제품 및 포장디자인, 인허가,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확보		
혁신 성장	기술·사업화 지원	상용화 제품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제품설계, 인증	수수료, 용역비, 재료비, 전문가활용비	2천만원
	공동 사업화	공동법인 설립, 투자, 생산시설 연계, 자회사		
	컨설팅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활용비 (공동법인 설립, 조인트벤처 추진, 기타 컨설팅 등)		

- 추진기업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및 법인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간이영수증 불가)
- 인건비, 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샘플구매, 제품양산비 지원불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부가세 기업부담)
- 전문가활용비는 추진기업 원천세 납부 후 계좌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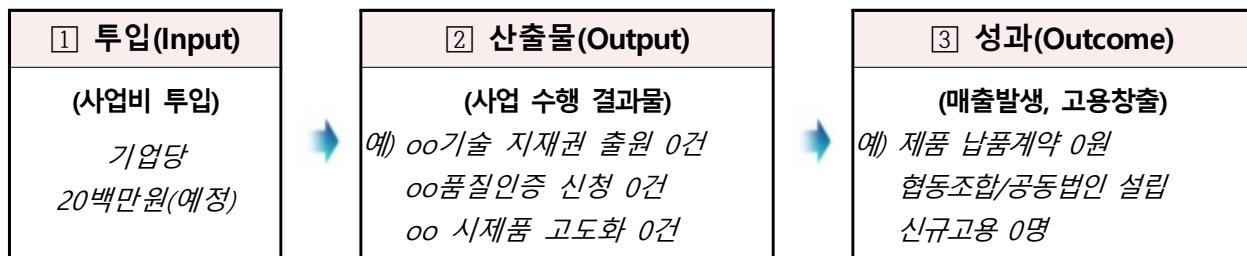
### □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금 70% 지급(11월 예정)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잔금 30% 지급(12월 예정)

구분	차수	지급시기	정산시기	내용
지급 및 정산(예정)	1차	11월	12월	선금 70% 지급 및 집행현황, 정산서류 확인
	2차	12월	12월	잔금 100% 지급 및 집행현황, 정산서류 확인

## (지원결과)

- 모든 사용 경비에 대하여 증빙 포함된 정산서류 필수 제출
- 사업종료 후 산출물(Output) 및 성과(Outcome)에 대한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에 따른 사전 성과목표 정량 제시  
\* 산출물 및 성과에 대한 주요지표 첨부1 참조



##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5. 11. 1.(토) ~ 11. 6.(목) 18:00 까지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http://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기업회원가입 ⇒ 교류협업지원사업신청 ⇒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지원 ⇒ 제출서류 업로드 ⇒ 최종제출 ⇒ 등록일 확인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압축하여 업로드 가능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자
1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추진기업
2	청렴 서약서	1부	추진기업, 참여기업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추진기업, 참여기업
4	신청자격 검토표	1부	추진기업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추진기업, 참여기업
6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중소벤처24( <a href="https://www.smes.go.kr/index">https://www.smes.go.kr/index</a> )발급	1부	추진기업
7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8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추진기업
9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추진기업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발급 * 지방세 : 민원 24( <a href="http://minwon.go.kr">minwon.go.kr</a> )발급	1부	추진기업

## 4. 선정평가

### □ (평가절차)

- (1단계) 서류검토 : 제출서류, 자격요건, 중복성 확인 등 사전검토
- (2단계) 선정평가 : 발표평가(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식) 외부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발표평가 추진
    - \* 비대면 발표(ZOOM) 추진 예정(변경가능)
  - (평가내용) 계획서, 발표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총 배점)	세부기준	배점
지원 필요성(30)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역할, 역량, 규모)	10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10
	협업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성	10
기술능력(20)	협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20
계획의 적정성(30)	사업목표의 구체성	10
	협업추진계획의 타당성	10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기대효과(20)	협업체제품 사업화 가능성	10
	산업 및 경제적 기여	10

## 5.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역사업본부	조하영 대리	042-331-0572	joha010@k-sca.or.kr

## 6. 유의 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전담기관의 협약체결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 성과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기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 시 신청 가능
-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 추진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타 정부사업을 통해 기지원 받은 경우
- 추진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 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http://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http://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⑤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접수마감일 '24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li><li>**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li></ul></li></ul>

붙임 1. 제출서류 1부. 끝.

## 첨부1

## 산출물 및 성과에 대한 주요지표

	항 목	내 용	예 시
산출물 (Output) 지표	시제품 개발 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수	시제품 0종 완성
	기술개발 결과	특허, 논문, 설계도면 등	특허 출원 0건, 설계도면 0건
	컨설팅 결과보고서	전문기관/전문가 자문 결과	컨설팅 수행일자 0부
	시험·인증 획득 건수	KC, CE, FDA 등	KC 인증 1건, CE 인증 추진 중
	사업계획서/IR자료 제작	투자유치용 자료	IR 피칭자료 1건
	디자인, 브랜딩 개발 결과	BI, CI, 패키지 등	브랜드 로고, 패키지 시안 완성
성과 (Outcome) 지표	매출 증가액	투입 전후 비교, 사업성과 연계	사업화 제품 매출 00 증가
	신규 고용 인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0명 채용
	투자유치 실적	엔젤, VC 등 외부 자금 유치	시드 투자 00 유치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외부 기관과 기술 계약 체결	대학 기술이전 계약 0건
	시장 진출	국내외 시장 진입, 유통계약	유통사 납품 계약 0건
	판로개척 실적	전시회, 온라인몰 입점 등	공공기관 입찰 등록 완료
	공동사업화 계약 체결	협력사와의 수익 분배 계약	공동 마케팅 MOU 체결
부가성과	기업 역량 강화	기술개발/사업화 경험 축적	-
	네트워크 확대	협업기관, 전문가와의 관계 형성	-
	브랜드 이미지 향상	공공기관 선정 → 신뢰도 상승	-
	고객 피드백 확보	시제품을 통한 고객 니즈 파악	-